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2013

Annual Report 2013



20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20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목 차

Contents

제 1 장 일반현황

□ 제 1 절 설치목적 및 직무 등	9
1. 설치목적	9
2. 직무	9
3. 조직과 구성	10
□ 제 2 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등	13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13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14

제 2 장 주요업무추진실적

□ 제 1 절 선거방송토론 평가분석	19
1. 2012 선거방송토론백서 발간	19
2.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	20
□ 제 2 절 선거방송토론 관련법규 제·개정	24
1. 관련법규 개정의견 제출	24
2.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정	26
3.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개정	27

□ 제 3 절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29
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29
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34
□ 제 4 절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41
1. 상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41
2. 하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관리	44
□ 제 5 절 선거방송토론 관리역량 강화	46
1. 위원 정비	46
2. 전문위원 정비	47
3. 위원 워크숍 개최	48
4.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워크숍 개최	48
□ 제 6 절 제6회 지방선거 대비 방송토론 활성화	50
1. 선거방송 TV토론 연수 개최	50
2.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작성	52
□ 제 7 절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53
1. 제9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53
2.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61
3.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70
4. 선거방송토론 바로보기 가이드 작성	71

제 3 장 부록

□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75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97
□ 중앙토론위 주관 역대 토론회 개최 현황	120

표 목 차

[표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현황	11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12
[표 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명단	13
[표 1-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15
[표 2-1] 2012 선거방송토론백서 목차	19
[표 2-2]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심포지엄 주제 및 참석자	20
[표 2-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심포지엄 주요 발제내용	21
[표 2-4]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 제출내용	24
[표 2-5] 규칙 주요 개정의견	25
[표 2-6]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의견	25
[표 2-7] 규칙 주요 개정의견	26
[표 2-8] 관리규정 주요내용	27
[표 2-9] 사무편람 주요 개정내용	28
[표 2-10]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29
[표 2-1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30
[표 2-12]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현황	30
[표 2-1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31
[표 2-14]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국민질문자 현황	32
[표 2-1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34
[표 2-16]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35
[표 2-17]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35
[표 2-18]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현황	36
[표 2-1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36
[표 2-2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전문가패널 현황	37
[표 2-2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40
[표 2-22] 2013년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현황	41
[표 2-23]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현황	42
[표 2-24]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현황	42

[표 2-25]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수집 현황	42
[표 2-26]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현황	43
[표 2-27]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43
[표 2-28]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44
[표 2-29]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회자 선정 현황	44
[표 2-30]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수집 현황	44
[표 2-31]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현황	45
[표 2-32]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45
[표 2-33] 위원 정비 현황	47
[표 2-34] 전문위원 정비 현황	47
[표 2-35] 위원 워크숍 개최 현황	48
[표 2-36]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워크숍 개최 현황	49
[표 2-37] 선거방송 TV토론 연수 개최현황	50
[표 2-38] 선거방송 TV토론 연수 내용	51
[표 2-39] 제9회 대학생토론대회 논제 현황	54
[표 2-40] 학교별 인원수	55
[표 2-41] 토론대회 진행방식	56
[표 2-42] 토론대회 진행방법	58
[표 2-43] 제9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내역	59
[표 2-44] 제9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언론보도 현황	61
[표 2-45] 2013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현황	62
[표 2-46]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수상자 현황	64
[표 2-47]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수상자 현황	66
[표 2-48]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생토론대회 수상자 현황	70

제 1 장 일반현황

설치목적 직무 등 제1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제 1 절 설치목적 및 직무 등



1. 설치목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직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리사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정한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 토론문화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 연구 및 개발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후보자의 정견, 공약 및 능력, 자질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

표시·도의원선거와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라 공직선거가 있는 기간에 주요 정당을 초청하여 정당의 정강,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자당의 정강,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당정책토론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3)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민주시민토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대학생토론대회와 고등학생토론대회, 토론 캠프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토론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자들의 교육·연수를 통해 보다 나은 토론회 운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 및 개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활성화와 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유관 학회 및 단체들과 다양한 교류, 협력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미나 개최 및 후원, 각종 연구용역 등을 주관함으로써 지속적인 토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조직과 구성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1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개)가 각각 창설하였다.

2008년 3월에는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제정(2008. 3. 21)으로 천안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천안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하고 천안시서북구와 천안시동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내에 여러 개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 지방선거 때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65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추가로 신설되었다(부산 1, 대구 1, 인천 2, 경기 5, 강원 10, 충북 6, 충남 7, 전북 6, 전남 10, 경북 10, 경남 7). 이에 따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수도 중앙과 16개 시·도를 포함하여 모두 266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창원시가 설치되어 3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창원시·마산시·진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하고, 5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창원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표 1-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현황

(2013. 12. 31 현재)

구 분	위원회수	지 역 별																
중 앙	1	전 국																
사도	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군	250	25	16	8	10	5	5	5	-	44	18	13	16	15	22	24	22	2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세종특별자치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증설되어 2013년 말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7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250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전국 268개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일 자	연 혁	비고
'04. 3. 1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법률안에 따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04. 3. 15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04. 3. 29까지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및 구·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181개) 창설	
'08. 3.	• 구·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181개 → 182개) ※ 증설 : 천안시서북구·천안시동남구위원회 ※ 폐지 : 천안시위원회	
'08. 5. 30	• 구·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 (182개 → 249개) ※ 증설 : 국회의원선거구위원회가 아닌 구·사·군위원회	
'10. 7.	• 구·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49개 → 251개) ※ 증설 : 창원시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위원회 ※ 폐지 : 창원사·마산사·진해시위원회	
'12. 7. 1	• 세종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16개 → 17개) •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폐지(251개 → 250개)	

제 2 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등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1)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11인(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표 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명단 (2013. 12. 31 현재)

직 위	성 명	직 업	추 천 기 관
위 원 장	이 정 희	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 성 룡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김 찬 태	방송인	K B S
	임 현 진	교 수	시민단체
	성 한 용	언론인	민주당
	성 문 용	변호사	법 조 계
	김 정 탁	교 수	학 계
	허 익 범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상 철	교 수	새누리당
	오 미 영	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 기 원	방송인	M B C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있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정책토론회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대담·토론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의 종류는 [표1-4]와 같다.

[표1-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주 관	종 류	선 거 별	개 최 시 기	횟 수	근 거 법 률
중 앙	후 보 자 초 청 대 담 · 토 론 회	대 통 령 선 거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비 례 대 표 국회의원선거	"	2회 이상	
	공 직 선 거 정 책 토 론 회	임기만료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월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 책 토 론 회	-	연 중 (단,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정당법」 제39조
시 · 도	후 보 자 초 청 대 담 · 토 론 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 의 원 선 거	선거운동기간중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구·시·군	대 담 · 토 론 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 거	"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 2 장 주요업무추진실적

선거방송토론 평가분석 제1절

선거방송토론 관련법규 제개정 제2절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제3절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제4절

선거방송토론 관리역량 강화 제5절

제6회 지방선거 대비 방송토론 활성화 제6절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제7절

제 1 절

선거방송토론 평가·분석



1. 2012 선거방송토론백서 발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2년에 실시된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2 선거방송토론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에는 2012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토론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사항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토론회, 선거방송토론 제도 및 기법의 연구와 평가,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대학생토론대회 등 각종 토론회 개최상황 등을 수록하고 그 밖에 관련 법규와 정책토론회 큐시트, 녹취록 등을 부록으로 담았으며 목차는 [표 2-1]과 같다. 또한, 이 백서는 국회, 행정기관, 정당, 관련 학회 등 유관기관과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백서 전문을 위원회 홈페이지 (www.debates.go.kr)에 탑재하였다.

[표 2-1] 2012 선거방송토론백서 목차

-
- | | |
|-------------------------|--------------------------|
| - 2012년 선거방송토론 개관 | · 2012년 주요 선거방송토론 개황 |
| · 일반 현황 | |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 | ·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
| ·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
| · 제19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 |
| - 제18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 | |
| ·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
| - 기타 주요 업무 | |
| ·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 ·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 토론 |
| ·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 · 선거방송토론 연구 및 지원 |
| - 각종 자료 | |
-

2.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와 공동 주최로 2013. 3. 22.(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은 김정탁(성균관대 교수) 한국언론학회 회장의 개회사, 이정희(한국외대 교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종민(경희대 교수)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가 전체 진행한 가운데 정당관계자, 학회 회원, 위원회 직원들과 대학생, 일반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표 2-2]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심포지엄 주제 및 참석자

구 분	주 제	발 제 자	토 론 자	사 회 자
제1주제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황영철(새누리당) 신경민(민주통합당) 이상규(통합진보당) 신동호(MBC) 박세각(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윤영철 (연세대)
제2주제	최근 미국, 영국의 선거방송토론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대선방송토론 발전방향	범기수 (성균관대)		
제3주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조진만 (덕성여대) 이재목 (연세대)	김봉철(조선대) 윤해진(MBC) 이종희(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류춘열 (국민대)

심포지엄 발제는 윤영철(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박상호(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이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범기수(성균관대) 교수가 ‘최근 외국의 후보 TV토론 사례와의 비교·분석’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토론자는 황영철(새누리당), 신경민(민주통합당), 이상규(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신



동호(MBC) 국장, 박세각(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또한, 류춘열(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한국정당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와 이재묵(연세대 국가관리위원회)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토론자로 김봉철(조선대) 교수와 윤해진(MBC) 전문연구원과 이종희(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이 참여하였다. 주요 발제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심포지엄 주요 발제내용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박상호)

- 다른 어떤 선거운동 방식보다 TV토론은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증대되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시청률)은 점차 줄어드는 문제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됨.
- 우리나라의 TV토론회가 선거 선진국의 토론회처럼 ‘정책대결’이나 ‘정책 제시’와 같은 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 TV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를 전하고 경쟁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대선 후보토론이 재미있게 되기 위해서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을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고, 토론회장에 유권자들이 참석하여 유권자들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간 경쟁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토론형식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형식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유용한지를 고려해야 함.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늘이고, 질문 및 보충질문을 시간총량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음. 또한, 토론의제는 유권자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이번 대선 토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민감한 제도적 쟁점인 후보자 참여기준은 결국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간 토론의 내용이나 질, 효율성 측면에서 유력 후보자간 토론의 유용성이라는 실증적 차원과 국민적 알 권리나 후보자의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충돌 간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토론회에서 사회자의 보충질문이 허용되었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국 대선 토론에서 활용하는 ‘팩트 체크’는 후보자의 발언에서 나온 수치나 내용등과 관련된 자료를 화면에 보여 줌으로써 후보자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유권자 참여가 이루어지는 TV공론장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 함.
- 토론회 개최목적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TV토론의 형식과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차기 대선 TV토론의 변화를 기대함.
- 대통령선거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있는 2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탁받은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최근 마영의 선거방송토론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대선토론 발전방향(범기수)

- 18대 대선 토론에서 자유토론과 상호토론방식을 도입하여 역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대선 토론중 가장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토론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너무 다양한 토론진행방식을 이용한 점은 후보자와 시청자에게 토론규칙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각 토론에서 다루어지는 토론주제와 질문수를 핵심쟁점 위주로 단순화하고,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생략하여 처음부터 후보자간 본격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함.
- 유권자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과 미국처럼 유권자가 직접 질문하는 형식의 도입, 폐쇄된 스튜디오를 벗어나 국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 미국의 타운홀 방식과 영국의 포디엄 형식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들이 다양한 반응과 움직임을 단조롭지 않고 다채로운 화면을 구성하여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당선 가능성이 있는 2~3인 이내로 초청 자격을 제한한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깊이 있는 후보자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임. 3차 토론과 같이 양자토론과 같은 방식의 토론이 앞으로도 계속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자가 기계적 형평성에 매몰되어 시간체크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적절하게 보충질문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후보자간 자유토론 중에도 한 후보자의 발언이 끝난 후 다른 후보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질문 등 적절한 시점에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후보자간 동문서답식의 토론을 방지하고 주제중심의 생산적인 토론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미국의 짐레처처럼 대통령선거 TV토론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TV토론 전문앵커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분석(조진만·이재욱)

- 유권자의 96.7%가 토론회를 1회 이상 시청하였고, 91.8%의 유권자들이 토론회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번 18대 대선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매체들이 선거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TV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 시청자들이 기대한 만큼 효과적인 선거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분석되었는데, 그 요인으로는 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 토론진행의 공정성, 흥미성, 유익성 등이 정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토론회 시청 횟수에 비례하여 유권자들은 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더 많은 새로운 이슈들을 획득하고 있고, 토론회 시청 이후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하여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유권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지지 성향은 토론회 시청 후 지지후보 변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토론회 시청으로 순수하게 지지 후보의 변동이 일어나는 비중은 크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의 시청으로 유권자는 기존지지 성향을 바꾸기보다는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남.
 - 토론회 시청 횟수와 실제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미약하나, 유권자가 토론회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느냐에 따라 시청자의 투표 후보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언론보도로는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보도되었으며, 심포지엄 진행 폴영상은 유튜브(www.youtube.com)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제 2 절

선거방송토론 관련법규 제개정



1. 관련법규 개정의견 제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토론회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향 등을 담아 2013. 2.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주요 제출내용으로는 [표2-4]와 같다.

[표 2-4]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 제출내용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 제출 내용

[공직선거법]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임기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1항을 준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규정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토론문화 육성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함.
- 후보자토론회 초청기준이 되는 시점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 명확하게 함.
- 다수의 후보자가 동시에 참석함에 따른 토론회의 효율성 저하를 극복하고, 유력 후보자간의 공약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보자토론회 초청기준을 교섭단체 정당 추천 후보자,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위탁받은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10%이상인 후보자로 통일함.
- 대통령선거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있는 2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탁받은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 토론회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수집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로 함.
- 대통령선거의 중계방송시간이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사·도단위 토론회가 공영방송사 동시 중계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함.
- 정책토론회 참석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토론회 참석자를 책임있는 당직자로 명문화함.

[정당법]

- 토론회 참석자를 책임있는 당직자로 명문화함.

또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견을 2013. 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개정의견은 [표2-5]와 같으며, 제출된 개정의견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표 2-5] 규칙 주요 개정의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의견

- 위원 추천의뢰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의뢰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신분 규정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과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과 동일하게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기획팀과 토론팀, 교육팀을 두도록 직제 등을 개편함.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에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특히, 2013.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는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대담·토론회 개최가 진행되면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담·토론회가 개최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공약 등에 대한 활발한 비교·검증을 유도하여 대담·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도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중계방송하도록 함으로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선정기준의 개선사항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2-6]과 같다.

[표 2-6]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의견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의견

- 대통령선거에서 1차 대담·토론회는 현행 초청 대상 기준을 적용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담·토론회는 1차 대담·토론회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3차 대담·토론회는 2차 대담·토론회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함.
- 시·도지사선거에서 1차 대담·토론회는 현행 초청 대상 기준을 적용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담·토론회는 1차 대담·토론회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도 대통령선거의 경우와 같이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하도록 함.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토론위원회의 사무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의견을 2013. 11.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2-7]과 같으며, 제출된 개정의견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표 2-7] 규칙 주요 개정의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의견

- 중앙토론위 사무국에 토론기획팀과 방송토론팀, 토론팀지원팀을 두도록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의 직제 등을 개편함.
- 구·시·군토론위원회 사무에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 구·시·군토론위원회 사무국과장의 토론팀위원회 사무지원 강화 및 감독 사무를 신설함.
- 후보자 대담·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의 제도를 정비함.
- 구·시·군토론위원회 대담·토론회 진행방식을 현실화함.
- 대담·토론회 불참 후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명확히 함.

2.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종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담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시기,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지참물 범위 등 대담·토론회 진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6항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워크숍을 통해 보완 후 전체 위원회의를 통해 제정, 관보 게재를 통해 고시하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토론회를 관리하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통지하였다. 관리규정 주요내용으로는 [표2-8]과 같다.

[표 2-8] 관리규정 주요내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주요내용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 토론회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회자는 각급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하도록 함.
- 토론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고,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각급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하도록 하며, 선정된 질문자의 유의사항을 명시함.
-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후보자 등록 전이라도 참석자 수를 예상하여 사전에 결정·공표할 수 있고,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정하여 지체없이 공표·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 사용할 수 있고, 질문요지 및 질문사항별로 질문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도록 함.
-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 설비내용을 후보자에게 안내하고, 토론회장의 구조는 후보자간 균형있는 설비와 참석대상 후보자 불참시 등의 좌석배치 방법을 명시함.
- 토론회에 청중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청중은 토론회 진행 중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공직선거법 제68조의 선거운동용 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도록 함.
- 토론자가 토론회 참석시 지참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사회자와 질문자의 역할과 토론자가 임의 이석시 재입장 금지 등을 명시함.
- 다른 언론사의 토론회 중계방송 요청에 대한 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의 협조업무와 방송화면 구성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시함.
-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할 수 있게 하고, 재방송 중지사유를 명시함.
-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선거일전 60일까지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함.

3.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개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원활한 주관 및 진행을 위하여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을 담은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을 개정하고 이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통지하였다. 사무편람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표2-9]와 같다.

[표 2-9] 사무편람 주요 개정내용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주요 개정 내용

1. 관련규정의 근거(법, 규칙, 관리규정)를 명시
2. 편람 내용 중 위원회 내부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예규적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의 표시
3. 위원회의 공개 관련 규정 반영
 - 법규사항(규칙 제15조) 내용을 추가
4. 전문(자문)위원 해촉사유 명시
 - 전문(자문)위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해촉사유로 명시
5. 불참사유서 미제출시 사무처리 수정
 -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엔 불참사실을 고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회자가 불참 및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6. 후보자 등의 동영상 제공 요청 시 절차 안내
 - 정보공개청구에 대비하여 처리절차를 구체화함.
7. 불참후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보완
 -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8. 방송시설, 장비 등 공동 사용시 감액처리에 관한 예시 제시
 -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2013. 11. 14 제정) 반영

제 3 절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1) 개최일시·장소 등 선정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3년 6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4개 정당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기섭(KBS) 보도위원의 진행으로 KBS 스튜디오 오에서 KBS·MBC·SBS 동시 생중계로 개최되었다.

[표 2-10]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내 용
개최일시·장소	2013. 6. 18(화) 10:00 ~ 12:00(120분) KBS TS-4 스튜디오
토 론 자	정책위의장 등
토론분야	경 제
사 회 자	홍기섭 (KBS 보도위원)
중계주관방송사	KBS
중계방송	KBS, MBC, SBS 동시생중계

2) 토론자(초청대상 정당) 선정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3년 2/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4개 정당을 초청대상 정당으로 선정하였다. 당초 ‘당대표’ 등 주요 당직자를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각 정당에서 경제정책 전문가인 안종범(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홍종학(민주당) 국회의원, 이상규(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기업인자영업 자위원회위원장 등 토론주제에 적합한 현직 국회의원을 토론자로 지정하였다.

[표 2-1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소 속 정 당	직 위	성 명	경 력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안 종 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민주당	국회의원	홍 종 학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이 상 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위원장	김 제 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3) 소위원회 구성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는 토론주제·진행방식(안), 질문사항(안)과 질문자 등의 검토를 위하여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영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토론회 종료시까지 운영하였다.

[표 2-12]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현황

구 성 위 원	운 영 기 간	직 무
이성룡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 허익범, 오미영 위원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진행방식(안) 검토 ·토론주제(안) 검토 ·질문사항(안)·질문자 검토 ·사회자 검토(필요시)

4) 사회자 선정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는 준비소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추천한 자에 대한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전체 위원회의에서 홍기섭 KBS 보도위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사회자에게 미리 ‘진행 매뉴얼’을 제공·안내하고 사회자가 질문사항을 직접 작성하여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등 토론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표 2-1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토 론 분 야	성 명	직 업	비 고
경 제	홍 기 섭	KBS 보도위원	

홍기섭 사회자는 KBS 뉴스9, 뉴스광장, 일요진단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진행 능력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매끄럽게 진행하였다.

5)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가. 토론의제 공모

토론의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토론주제 선정전까지 토론주제와 질문사항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공모하고, 토론주제가 선정된 이후부터는 선정된 주제별로 질문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공모를 실시하였다. 이 공모에는 언론사 등 보도자로 제공, 홈페이지 안내, 중계방송사 자막방송 표출, 자체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토론주제 82건, 질문 199건 등 총 75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나. 토론의제 선정

토론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회 출입기자·경제부 기자, 해당 상임위 소속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국민 토론주제·질문 공모 외에 대한변협 등 3개 단체, 전문위원 5인, 새누리당·진보정의당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였다.

6월 임시국회 중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처리와 관련하여 정당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방향’과 당면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해법’ 등 정당의 정책과 관련된 큰 틀의 2개 주제와 ‘갑을관계’, ‘통상임금’, ‘고용 및 근로환경 문제’, ‘지하경제 양성화’ 등 4개의 국민질문 주제 등 총 6개를 토론주제로 선정하였다.

전체 위원회의에서 질문요지 공개와 관련하여 국민질문은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토론자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충분한 정책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질문사항 선정 후 토론자 등에게 통지하였다.

다. 토론진행방식 선정

토론진행방식은 공모로 선정된 4명의 국민이 직접 스튜디오에서 질문하고 각 정당의 당원·국민이 방청자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방식을 위원회 사상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6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국민의 공통질문·답변 후 토론자간 자유토론 방식으로 사회자 질문과 국민 질문별로 자유토론 시간을 차등 배분(2분30초, 3분)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전체 위원회의에서 규칙 제23조제6항의 ‘토론자간 주장과 반론을 위한 시간은 균형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간 직접 질문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6) 국민질문자 선정·관리

국민질문자의 선정은 질문자가 작성·제출한 주제별 질문사항에서 공통질문으로서의 적합여부와 질문 제출자의 성별, 연령대, 직업, 토론회 방송출연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준비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국민질문자는 질문 제출자와 협의하여 질문내용의 문구 등을 수정·보완한 후 전체 위원회의에서 4명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국민질문자 선정 후에는 비당원확인서를 징구하고 도착시간 등 유의사항을 문자메시지·유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토론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표 2-14]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국민질문자 현황

토론주제	성명	연령대	성별	비고
갑을관계	김진구	30대	남	
통상임금	최영란	40대	여	
고용 및 근로환경 문제	김석순	40대	여	
지하경제 양성화	정정환	70대	남	

7) 설명회 개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는 2013. 6. 11.(화) 10:00에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국회 의원회관 842호) 회의실에서 초청대상 4개 정당 토론자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토론주제와 진행방식 등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토론자의 좌석과 발

언순서를 추첨하였다. 추첨결과는 A : 새누리당, B : 진보정의당, C : 통합진보당, D : 민주당 순이었다.

또한, 각 포맷별 토론시간관리시스템(타이머) 운용 시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진행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토론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8) 개최 홍보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78개 단체에 안내 공문 발송, 중앙선관위 및 선거연수원 전광판 표출, 국회 의원회관 내 포스터 부착, 각 정당에 TV시청 안내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토론회 개최 전 KBS 뉴스(단신), 연합뉴스 등의 언론사와 아주경제 등 지역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토론회 개최 후에는 연합뉴스 등 언론사와 뉴스1, 뉴시스 등 인터넷언론사에 많이 보도되었다.

9) 토론회장 설비 등



토론회장은 사회자와 토론자의 맞대면 구조로 국민참여형 토론방식에 맞추어 방청객을 둔 설비,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조명 세팅과 마이크 테스트 등의 완벽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깔끔하게 설비되었다. 또한, 분장실 2개소, 위원 모니터실, 질문자 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설비하여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10) 토론 진행

토론회 진행은 정당의 당원 등 10여명, 별도 모집된 국민 19명 등 30여명의 방청자와 국민질문자 4명 등이 직접 스튜디오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토론회 진행 중 국민질문자들은 별 무리없이 정해진 질문을 토론자들에게 질문하였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는 화면분할이나 리액션 샷 등 다양한 카메라 샷으로 역동적인 화면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자막방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시청 편의를 제공하였다. 토론회는 각 토론자가 발언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회자가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예정된 시간에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11) 시청률 현황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시청률(4.0%)은 국민참여형 진행방식을 도입하였음에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작년 정당정책토론회(평균 3.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평일 오전에 방송되는 등 시청률 제고에 한계가 노정되었다.

[표 2-1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구 분	토론자	AGB ¹⁾			
		KBS1	MBC	SBS	계
1차(6.18. 10:00)	정책위의장 등	2.6	0.8	0.6	4.0

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1) 개최일시·장소 등 선정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4개 정당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철(MBC) 논설위원의 진행과 김연명(중앙대) 교수, 한상완(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이 질문자로 참석하여 MBC 스튜디오에서 KBS·MBC·SBS 동시 생중계로 개최되었다.

1) 우리나라의 시청률은 대부분 AGB닐슨미디어리서치(전국 11개도시 2,050가구)와 TNS미디어코리아(전국 6개 광역시 2,000가구)가 조사하고 있다.

[표 2-16]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 분	내 용
개최일시장소	2013. 11. 25(월) 10:00 ~ 12:00(120분) MBC D 스튜디오
토 론 자	정책위의장 등
토론분야	경제·복지
사 회 자	김상철 (MBC 논설위원)
질 문 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중계주관방송사	MBC
중계방송	KBS, MBC, SBS 동시생중계

2) 토론자(초청대상 정당) 선정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3년 3/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을 초청대상 정당으로 결정하였다.

당초 4개 정당 모두 토론주제 관련 분야에 적합한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였으나, 설명회 개최전일(10.19.)에 통합진보당 현직 의원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최고위원으로 토론자를 변경하여 안종범(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김용익(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민병렬(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을 토론자로 지정하였다.

[표 2-17]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소 속 정 당	직 위	성 명	경 력
새 누 리 당	정 책 위 부 의 장	안 종 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민 주 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김 용 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통 합 진 보 당	최 고 위 원	민 병 렬	부산시당 공동위원장
정 의 당	정 책 위 의 장	박 원 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3) 소위원회 구성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는 토론주제·진행방식(안), 질문사항(안)과

질문자 등의 검토를 위하여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영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토론회 종료시까지 운영하였는데, 준비소위원회 운영 중 성경섭 위원이 임기만료에 따라 해촉됨에 따라 송기원 위원이 위촉되어 위원이 변경되었다.

[표 2-18]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현황

구 성 위 원	운 영 기 간	직 무
상임위원, 김찬태, 성경섭(송기원), 허익범, 오미영 위원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진행방식(안) 검토 ·토론주제(안) 검토 ·질문사항(안)·질문자 검토 ·사회자 검토(필요시)

※ 성경섭 위원의 임기만료로 송기원 위원으로 변경

4) 사회자 선정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는 사무국에서 사회자 후보군을 제공하고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경제 관련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많은 김상철(MBC) 논설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후에는 사회자에게 미리 ‘진행 매뉴얼’을 제공·안내하고, 사회자가 질문사항을 직접 작성하여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등 사회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였다.

[표 2-1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토 론 분 야	성 명	직 업	비 고
경 제 · 복 지	김 상 철	MBC 논설위원	

5)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가. 토론의제 선정

토론의제는 대한변협 등 3개 단체, 전문위원 5인, 4개 정당(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추천내용, 국회 출입기자, 해당 상임위 소속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의제를 수집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경제 분야 중 재정과 복지정책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주제를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로 정하고 ‘복지정책 방향’과 ‘복지재원의 마련 방안과 증세의 필요성’이라는 2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였다.

대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질문의 요지는 공개하기로 결정·통지하였지만, 전문가 패널의 질문사항은 토론자간의 자유토론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패널들의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질문 작성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나. 토론진행방식 선정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국민패널방식을 채택하여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전문가 패널질문방식을 도입하였다. 패널위주의 토론보다는 토론자들의 토론에 비중을 두어 진행순서를 토론자간 자유토론 후 이어서 패널들이 질문하는 순으로 결정하였다.

전체 진행방식은 사회자 공통질문에 토론자의 답변(각 1분30초)을 듣고, 두 개의 소주제에 대한 토론자 자유토론(각 6분)과 패널 질문·토론자 답변(각 5분)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된 후, 마지막으로 맺음말(각 1분)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한 명의 패널과 토론자의 질문·답변시간이 2분30초 정도이므로 패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질문자 선정·관리

토론주제 결정 후 주제 분야에 맞는 적합한 패널 선정을 위해 주요 TV토론 프로그램 등의 참석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사전 제공하고, 사회자 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적임자 후보군을 토대로 전문위원 회의와 준비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전문가 패널 2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표 2-2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전문가패널 현황

성 명	직 업	경 력	비고
김 연 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한 상 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특히, 전문가 패널로부터 토론회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토론자 측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없다는 약속내용을 포함한 ‘비당원 확인서’를 징구하고 준비소위원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안내하였으며, 질문자의 좌석 및 질문 순서 결정을 위한 추첨을 통해 관리의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일 도착 시간 등 유의사항을 문자메시지·유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토론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7) 설명회 개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는 2013. 11. 19.(화) 14:00에 국회 의원회관 (614-1호) 회의실에서 4개 정당 토론자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토론주제와 진행방식 등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였다. 추첨결과는 A : 새누리당, B : 정의당, C : 민주당, D : 통합진보당 순이었다.



각 포맷별 토론시간관리시스템(타이머) 운용 시연과 별도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토론주제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8) 개최 홍보 및 방청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72개 단체에 안내 공문 발송, 블로그 기자 취재협조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토론회 개최가 월요일인 점을 고려하여 11.20.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개최일전 KBS 뉴스(단신), 연합뉴스, 강원일보 등을 통해 보도되었으며(9개사), 토론회 개최일 후에는 연합뉴스 등 언론사와 뉴스1, 뉴시스 등 인터넷언론사의 보도가 많았다(총11개사).

특히,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오산시 지역 주민과 토론문화연구회원 등 32명이 청중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9) 토론회장 설비 등



패널과 청중의 참여에 따른 세트 설비, 진행 등에 대해 방송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였다. 토론회장은 사회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각 패널을 두고 토론자와의 맞대면 구조로 하고, 패널의 뒤쪽으로 청중)의 좌석을 설비하였고, 토론자 뒷 배경을 푸른 계열과 황금빛 무늬 등을 넣어 제작을 하였으나, 세트의 재질상 문양이 다소 복잡한 느낌을 주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조명 세팅 및 마이크 테스트 등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세트를 완벽하게 설비하였다. 분장실, 위원 모니터실, 토론자 대기실, 사회자질문자 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설비하여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10) 토론 진행

사회자는 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맺음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였고, 토론진행이 다소 빨라 맺음말 발언시간을 30초 늘렸다. 사회자가 방송 중에 패널과 토론자간의 질문·답변시간 종료 후, 일부 토론자의 남은 시간을 다음 순서인 맺음말 시간에 추가 산정 하는 것으로 안내하여 번복하기도 하였다.

전문가 패널 중 일부는 토론자의 소속 정당명을 변경 전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질문의 도입과정이 다소 길어 토론자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일부 토론자의 경우 준비된 참고자료를 낭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며, 토론자 자유토론 시 1회 발언에 3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역동적인 토론회가 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는 화면분할이나 리액션 샷 등 다양한 카메라 샷으로 역동적인 화면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자막방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시청 편의를 제공하였다.

11) 시청률 현황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복지정책과 전문가 패널방식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시청률(4.8%, AGB)을 기록하였다.



[표 2-2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단위 : %)

구 분	AGB				TNS			
	계	KBS1	MBC	SBS	계	KBS1	MBC	SBS
전 국	4.8	2.3	1.2	1.3	4.7	3.2	0.7	0.3
수도권	4.5	1.7	1.3	1.5	5.4	3.5	0.8	1.1

제 4 절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2013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로 정책선거 실현에 기여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공약 검증의 토론회로 관리하는 등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점검하여 관리하였다.

[표 2-22] 2013년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현황

(단위 : 회)

시기별	선거별	합 계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합	계	9	7	2
상반기	국회의원	4	3	1
	구·시·군의장	3	2	1
하반기	국회의원	2	2	-

1. 상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2013. 4. 24. 실시한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간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의 개정이 없어 편람 등 사무처리 방법에 변경을 주지 않아 후보자토론회 준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현지의 과거 후보자토론회 개최현황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대담·토론회와 합동방송연설회는 5개 선거구에서 총 7회가 개최되었다.

[표 2-23]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현황

구 분	선거 구수	계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소계	초청	비초청	합동	소계	합동	비초청
계	5	7	5	4	-	1	2	1	1
국회의원선거	3	4	3	3	-	-	1	-	1
자치단체장선거	2	3	2	1	-	1	1	1	-

사회자는 학계와 방송언론계 종사자로 선정하였으며, 진행 경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표 2-24]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현황

구분	사회자 직업						진행경험	
	계	학계	방송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기타	유	무
인 원(명)	7	6	1	-	-	-	5	2

토론주제는 유·관·기·관·단·체 추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후보자 공약,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지역현안과 경제 분야가 토론주제로 많이 선정되었다.

[표 2-25]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수집 현황

구분	총 계	여론조사	전문가단체 추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후보자 공약사항	유·관·기·관·단·체 추천
건 수	51	1	-	19	4	27

토론 진행방식은 기초연설 이후 사회자 공통질문을 기본으로 하고, 후보자간 공약발표와 후보자 개별질문과 후보자간 개별 질문 형태 등 기존과 같은 형식을 활용하였다.

[표 2-26]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현황

구분	기조 연설	사회자 주도형		혼 합 형		후보자 주도형					맹음말	기타
		공동 질문	개별 질문	사회자 공통질문과 후보자 보충질문	사회자 개별질문과 후보자 보충질문	공약 발표와 질문	주도권 주 제 지 정	자 유 주 제	자유 토론	후보자 개별질문 (보충질문)		
횟수	5	18			1	3				4	4	1

수화 통역은 모든 선거구에서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토론회 개최 당일 이미 선정된 사회가 불참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게 의결하여 선임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표 2-27]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선거구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노원구병	초청	토론 회	인덕 대학교 은봉관 은봉홀	4. 16.(화) 15:00 ~ 16:32	4. 18.(목) 20:00	씨앤앰 노원 케이블TV, 티브로드 노원방송	김현주 (교수)	허준영(새) 정태홍(진) 김지선(정) 안철수(무)	-
	비초청	방송 연설		4. 16.(화) 17:00~17:10	토론회 이어서 방송			나기환(무)	-
영도구	초청	토론 회	KBS부산 스튜디오	4. 17.(수) 22:00 ~ 23:10	4. 17.(수) 22:00~23:10	KBS부산 방송총국	이경찬 (영산대 교수)	김무성(새) 김비오(민) 민병렬(진)	-
부여군 청양군	초청	토론 회	대전MBC 공개홀	4. 22.(월) 11:00 ~ 12:00	4. 22.(월) 18:20 ~ 19:15	대전MBC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이완구(새) 황인석(민) 천성인(진)	-
가평군	초청	토론 회	씨앤앰 경동방송 스튜디오	4. 17.(수) 10:00	4. 21.(일) 20:00	씨앤앰 경동방송	이원희 (교수)	김봉현(민) 정진구(무)	-
	비초청	방송 연설	"	4. 17.(수) 14:00	"	"	"	육도수(무) 박창석(무) 김성기(무)	-
함양군	합동	토론 회	(주)MBC 경남 진주본부 스튜디오	4. 19.(금) 18:00 ~ 19:15	4. 19.(금) 18:00 ~ 19:15	(주)MBC 경남 진주본부	김형신 (아나운서)	서춘수(무) 임창호(무) 이창구(무) 김재웅(무)	-

주) 정당명 약칭 :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진보정의당(정), 통합진보당(진), 무소속(무)

2. 하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관리

2013. 10. 30. 실시된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의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2개 선거구에서 총 2회 개최되었다.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토론회에 불참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표 2-28]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선거구수	계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소계	초청	비초청	합동	소계	합동	비초청
국회의원선거	2	2	2	2	-	-	-	-	-

사회자는 학계와 법조계 종사자로 선정하였으며, 진행 경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2-29]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회자 선정 현황

구분	사회자 직업						진행경험	
	계	학계	방송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기타	유	무
인 원(명)	2	1	-	-	1	-	2	-

질문사항은 후보자 공약을 위주로 여론조사,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이용, 전문가단체 추천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표 2-30]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수집 현황

구분	총 계	여론조사	전문가단체 추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후보자 공약사항	기타
건수	131	20	9	15	46	41

토론 진행방식은 기초연설 이후 사회자 공통질문을 기본으로 하고, 후보자간

공약발표와 후보자 개별질문과 후보자간 개별 질문 형태 등 기존과 같은 형식을 활용하였다.

[표 2-31]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현황

구분	기조 연설	사회자 주도형		혼 합 형		후보자 주도형					맺음말	기타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사회자 공통질문과 후보자 보충질문	사회자 개별질문과 후보자 보충질문	공약 발표와 질문	주도권 주제 지정	자유 주제	자유 토론	후보자 개별질문 (보충질문)		
횟수	2	5	3	-	-	3	1	-	-	-	2	-

[표 2-32]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 현황

선거구명	대상	개최 구분	장 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화성시갑	초청	대담	티브로드 수원방송 스튜디오	10. 24.(목) 14:20 ~ 15:00	10. 24.(목) 21:00 ~ 21:40	티브로드 수원방송	장성근 (변호사)	홍성규(진)	서청원(새) 오일용(민)
포항시남구 울릉군	초청	토론	포항MBC 공개홀	4. 17.(수) 22:00 ~ 23:10	4. 17.(수) 22:00 ~ 23:10	KBS부산 방송총국	이경찬 (영산대 교수)	허대만(민) 박산용(진)	박명재(새)

주) 정당명 약칭 : 새누리당(새), 민주당(민), 통합진보당(진)

제 5 절

선거방송토론 관리역량 강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의 원활한 주관 및 진행을 위하여 위원과 전문위원을 정비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종 토론회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워크숍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간사를 대상으로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 위원 정비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의 차질없는 주관·진행을 위하여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을 정비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3대 위원장인 유일상(건국대 교수) 위원장과 이정희(한국외대 교수) 위원이 2013. 3. 18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미영 가천대 교수와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를 2013. 3. 19.자로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정희(한국외대 교수) 위원을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유일상 위원장에게는 임기기간 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업무와 선거방송토론 문화 발전에 공헌한 업적을 기리고자 재직기념패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성경섭(MBC 논설위원실장) 위원이 2013. 10. 18.자로 임기만료에 따라 MBC에 위원 추천 의뢰 후 송기원 MBC 논설위원을 2013. 10. 19.자로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예정)일 현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방송토론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표 2-33] 위원 정비 현황

직 위	성 명	직 업	추천기관	정비사항	비 고
위 원 장	유 일 상	건국대 교수	자 체	3. 18. 임기만료	
위 원	이 정 희	한국외대 교 수	자 체	3. 19. 위 측	3. 20. 위원장 호선
위 원	오 미 영	가천대 교수	자 체	3. 19. 위 측	
위 원	성 경 섭	MBC 논설위원실장	MBC	10. 18. 임기만료	
위 원	송 기 원	MBC 논설위원	MBC	10. 19. 위 측	

2. 전문위원 정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하거나 분야별로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는 등 전문위원을 정비하였다.

[표 2-34] 전문위원 정비 현황

성 명	현 직	정비사항	비 고
전 태 국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 8. 임기만료	
하 태 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8. 임기만료	
남 종 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3. 8. 임기만료	
이 영 배	JTBC 보도국 차장	4. 18. 재 위 측	
이 진 로	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4. 18. 재 위 측	
박 유 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4. 18. 위 측	
강 내 원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4. 18. 위 측	
조 성 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 18. 위 측	여

3. 위원 워크숍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3. 8. 29. (목) 청평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과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운영기준(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과 각 조문별 주요 사항을 토의하였다.



[표 2-35] 위원 워크숍 개최 현황

일시	장소	참 석 자	내 용
2013. 8. 29 ~ 8. 30	청평자연휴양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및 직원	후보자토론회 운영기준안 제정 관련 토의

이 워크숍에서는 운영기준안의 적절한 명칭 채택과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사회자·질문자·진행방식·토론의제에 관한 사항은 물론 토론회장의 설비·토론회의 청중·토론자의 착용물과 지참물·토론회의 진행 사항과 중계방송·재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4.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워크숍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방송토론을 준비하고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정(안) 등에 관한 토의를 통해 선거방송토론 법규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7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과 간사를 대상으로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표 2-36]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리 워크숍 개최 현황

일시	장소	참 석 대 상	내 용
2013. 9. 26.(목) ~ 9. 27.(금)	엘도라도리조트 (전남 신안군)	17개 시·도토론회 사무국장 및 간사	- 운영기준(안) 제정 및 사무편람 개정 (안) 토의·설명 - 토론실무 과제별 분임 토의 및 발표

이 워크숍에서는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안)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성룡 상임위원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자를 4분임으로 나누어 분임별 토의과제를 할당하여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임별 토의과제로는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제고 방안”,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및 이의제기 대처방안”, “주요 토론 진행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 “여론조사를 통한 초청후보자 선정의 문제점 및 대책”, “공동사용 무대설치비 분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바람직한 의제 선정 방안”, “토론회 중단, 방송 중단의 예상 사례 및 대처 방안”, “사회자의 선정과 역할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었다.



제 6 절

제6회 지방선거 대비

방송토론 활성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에게 체험을 통한 TV토론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 TV토론 연수를 개최하였으며, 후보자들에게 선거방송토론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을 보완하였다.

1. 선거방송 TV토론 연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3. 11. 30.(토)과 12. 1.(일) 양일간 MBC 아카데미(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63명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 18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방송 TV토론 연수를 개최하였다.



[표 2-37] 선거방송 TV토론 연수 개최현황

차수	개최일자	개최 장소	참가현황			
			신청인원	참가인원	참여율	시·도토론위 간사
			105명	63명	60.0%	
1차	2013.11.30.(토)	MBC 아카데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4명	36명	66.6%	11명
2차	2013.12. 1.(일)		51명	27명	52.9%	7명

역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선거방송 TV토론 연수는 전국 각지에서 기초단체장, 구의회부위원장, 광역·기초의원, 변호사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총 105명이 참가 신청하여 연수에 대한 큰 관심과 연수 후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연수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에게 체험을 통한 TV토론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거방송토론 분야 중 필수적인 내용으로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교육 전문기관인 MBC아카데미의 교육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는 등 연수

내용에 충실을 기하였다.

특히, 방송 경력이 많은 현직 아나운서 등을 강사로 섭외하여 카메라 적응 훈련 및 TV토론 체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의 스피치를 교정해주고 다양한 토론 진행 방식을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간사 등 18명이 연수에 직접 참가하여 선거방송토론의 제작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등 TV토론 실무 운영능력을 키우는 한편, 향후 후보자 토론회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2-38] 선거방송 TV토론 연수 내용

일 시	강 좌 명	교 육 내 용	강 사 진
09:00 ~09:30	입 교	- 입교식 - 과정 안내	
09:30 ~10:50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의 절차 및 방법 - 모의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배부·안내	토론지원팀장 유재호
11:00 ~12:00	이미지컨설팅	- 이미지컨설팅	국승채 (MBC아카데미 강사)
12:00 ~13:30	점심시간	- 점심식사	
13:30 ~18:00	카메라 적응훈련 및 TV토론 체험	- 스피치의 기본 및 파워스피치 방법 훈련 - 카메라 적응 훈련 및 스튜디오 TV토론 체험 (방송스튜디오 녹화실습, 실전테스트) - 설문조사	송지연 김용필 박경호 (MBC아카데미 강사)

소수 정예(1개반 평균 10명)로 반을 편성(3개반)하여 실습과 이론 연수를 함으로써 다양한 토론방식을 경험하게 하였고, 각 반별로 전문직공무원이 교육 진행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토론방식별 장단점을 실제 토론과 접목시켜 설명·강평함으로써 토론방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였다.

연수 후에는 1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도록 본인들의 실습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송부하여 교육 후에도 자신의 장·단점을 다시 확인하여 선거방송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적절한 시기의 보도자료 제공으로 정책선거의 중심에 우리 위원회가 있음을 알려 연합뉴스, KBS-TV 뉴스, YTN 등에 보도되어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도록 하였고, 연수 다음날 아침 MBC TV 뉴스투데이 방송에서 ‘지방선거 출마희망자에 TV토론 연수’ 제하로 보도되어 국민과 후보자를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였다.

다만, 생업에 종사하는 출마 희망자들에게 보다 많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 일정을 주말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불참자(신청자 105명, 참가자 63명, 참석율 60%)가 많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이번 연수에 대한 교육과정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지방으로의 교육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으므로 시도 또는 권역별 단위로 연수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작성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기본 준비 매뉴얼을 작성하여 2014년 지방선거 전에 후보자들에게 제공하여 선거방송토론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을 보완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후보자를 위한 방송이해, 선거방송토론 전략 및 절차 소개, 토론진행표, 진행방식, 대본, 방송용어, 관련법규 등을 수록하여 후보자 등이 휴대에 용이하고 토론 준비에 참고하기 편리하게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감수를 거쳐 ‘14. 3월중 후보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제 7 절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과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 기념 제9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미래유권자의 선거·정치 관심 제고를 위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1. 제9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 및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3. 5. 11.(토)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KT인재개발원(대전)에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 대회 주관 및 후원

이번 대학생토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를 공동주관 단체로 선정하였다. 특히,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대회의 중요 사안에 대한 협업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각 팀장,



학회장 등 교수 3인 등 총 5인으로 ‘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회 준비 및 진행 과정의 현안을 처리하여 차질없이 개최하였다.

특히, 지상파 방송 3사 외에 JTBC와 한국대학신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후원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후원기관 상장(상품)을 마련하였으며, 결승전 TV 방송, 대회 홍보, 대회 진행 지원 등 실질적인 후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일조하였다.

2) 개최 일자 및 장소

이번 대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 기념을 겸한 대회로 기획하여 2013. 5월 제2회 유권자 주간 기간 중 5. 11.(토)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또한, 대학교 시설 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대회장 부족, 원거리 이동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하나의 장소에서 예선과 본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KT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소재)을 개최 장소로 선정하였다.

3) 토론논제

토론논제는 정치·선거 또는 대학생들의 공통관심사, 최근 현안사항으로 일반인 69명과 직원 104명 등 총 209명으로부터 367건을 공모하여 사무국 자체 심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부서 및 대회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예선과 본선을 구분한 논제 2개를 선정하였다.

[표 2-39] 제9회 대학생토론대회 논제 현황

구 분	토론 논제
예 선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
본 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양자토론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대회와는 달리 논제에 대해 희망하는 찬성 또는 반대를 토론 직전에 제출하게 하고 경합 시에만 추첨을 통해 찬·반 팀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토론의 진정성을 높이려 하였다.

4) 참가자 접수

참가자 접수는 2013. 3. 15.부터 4. 7.까지 20여일간 진행하였고,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전국 주요대학 포스터 첩부, 한국대학신문 신문광고 및 온라인 배너광고, 제8회 대회 참가자들에게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회를 안내·홍보하였다.

지난 제8회 대회에서 사전심사의 어려움이 있었던 찬반입론 영상을 생략하는 대신 논제별 토론개요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바,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적은 125팀이 신청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2개 주제로 인한 대회준비의 부담과 대회일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 학기 중에 개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당초에 128팀 초과 시 서면심사와 사전심사를 통해 128팀을 확정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참가 신청한 125팀(실제 등록은 111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사전심사없이 예선경기를 진행하였다.



[표 2-40] 학교별 인원수[42개 대학 250명, ()은 연합팀 중 해당자]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극동대
2	2	16	4	12	4	15(3)	6	2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대전대	명지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가톨릭대
12	10(2)	2(2)	2	15(1)	2	8(2)	5(1)	1(1)
부산외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송실대	연세대
2	10	12	12	3(1)	4	5(1)	4	20(2)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동대
4(2)	1(1)	2	2	7(1)	4(2)	2	2	12
한림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홍익대	협성대			
2	1(1)	1(1)	13(1)	4(2)	1(1)			

5) 토론 진행방식

이번 대회도 제4회 대회부터 진행해 온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역대 대회 결승전 영상을 게시하여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나 이의제기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표 2-41] 토론대회 진행방식

방 식	진행시간			
	예선	64강~8강	준결승	결승
① 찬성팀 기조연설	1분	1분	1분	1분
② 반대팀 기조연설	1분	1분	1분	1분
③ 자유토론(팀당)	6분	8분	8분	10분
④ 반대팀 맺음말	1분	1분	1분	1분
⑤ 찬성팀 맺음말	1분	1분	1분	1분
합 계	16분	20분	20분	24분

원활한 대회운영과 단계별 적절한 심사를 위해 대회 진행시간을 차등 배정하였으며, 결승전과 준결승전의 자유토론 시간은 지난 대회에서의 토론의 긴장성이 줄어든 경험을 반영하여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6) 심사

심사위원은 대회장별로 교수 심사위원 1명, 선관위 4~5급 및 6급 직원 각 1명씩 총 3명으로 16개 심사반을 구성하였으며 교수 심사위원은 학회의 협조로, 선관위 직원은 공모를 통해 위촉하였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사전에 e-mail을 통해 교육자료를 송부하고 숙지토록 한 후 대회일 경기 시작 전에 교육을 통해 심사위원별 임무부여, 대회진행방법, 리그전 심사규칙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제8회 대회시 사용한 심사표를 보완하여 전달력 영역에서 메타포(은유적 어법) 사용 여부와 토론태도 영역에서 말꼬리잡기 등을 추가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친절하고 공정했다는 참가자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

레도 없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심사위원간 평가기준이 달라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수가 이전 대회보다 많아지고 심사위원들의 경기 배정도 많아 심사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7) 대회 진행 및 운영

대회형식은 등록한 111팀을 32개조(조별 3~4팀)로 나누어 리그전을 통해 2팀을 선발하여 64강을 가린 후 64강부터는 토너먼트로 8강까지 진행하였으며 준결승과 결승은 1주일 후에 JT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였다.

조 편성은 참가신청 번호(1번~125번)순에 의해 32개조(조별 3~4팀)로 편성(1차), 편성결과 1개조에 같은 대학 소속의 팀원이 있는 경우 조정(2차), 참가 등록 후 미등록으로 2팀 조가 된 경우 4팀 조와 당일 조정(최종)하는 순으로 예선리그조를 편성하였고, 64강 경기 시에는 예선리그 조별 1·2위 팀 간 맞대결을 피하도록 편성하였다.

대회현장에서 참가등록 결과에 따라 예선리그 조 편성이 되는 관계로 신속한 등록과 조 편성이 대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상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업무분담을 실시하여 등록접수와 대진표 작성이 신속히 진행되어 첫날 리그전이 계획된 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토너먼트 경기로 치른 본선에서는 일부 대회장에서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종료되어, 심사·정리시간에 좀 더 여유를 두는 방안과 대회장별로 토너먼트 우승팀을 발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2-42] 토론대회 진행방법

5. 11(토) - 예선리그		5. 12(일) - 본선토너먼트	
09:20~10:00	등록·교육 (심사위원, 운영요원)	09:30~10:00	64강(1경기)
		10:00~10:30	64강(2경기)
10:00~10:20	등록·교육(참가자)	10:30~11:00	32강
10:30~10:50	개회식	11:00~11:30	16강
11:10~12:00	예선(2경기)	11:30~12:00	8강
13:00~17:10	예선(10경기)	12:00~12:30	시상식·폐회식



청운대학교 학생 32명을 대학생 운영요원으로 선정하여 타이머운영과 진행보조 업무로 구분 배치하고 대회당일 타이머 운영실습, 임무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교육을 실시하여 대회 일정별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였다. 일부 경기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타이머 위치가 바뀌는 타이머 운영 실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대회가 진행되었다.

8) 개회식 및 시상식

개회식은 대회 참가자, 심사위원, 운영요원, 내외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의 개회사,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축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상임위원의 격려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 기념영상을 상영하는 순으

로 진행하였다.

시상식은 두 차례가 있었던 바, 8강까지 치르고 수상이 확정된 동상 4팀, 장려상 8팀, 후원사특별상 2팀, 스피커상 8명에 대해서는 대회 현장에서 시상하였고, 4강 진출자 수상인 대상, 금상, 은상은 JTBC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시상하였다. 시상규모는 전년 대회보다 특별장학금 4백만원이 증액된 대회 장학금과 후원사특별상 2팀이 추가되었다.

[표 2-43] 제9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내역

수 상 내 역	수 상 팀 (자)
대 상 (중앙선관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7백만원)	경 청 (연세대 : 황귀빈, 김경애)
금 상 (중앙선관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4백만원)	코기토 (고려대 : 문정현, 차오름)
은 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팀당 1백50만원)	포텐셜 (서울대 : 최동준, 신진경) E . G (연세대 : 손서희, 이혜린)
동 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팀당 50만원)	시원한민기 (부경대 : 채민기, 박시원) 상태쏘곳 (한동대 : 임상현, 김태환) 박감독오대표 (한양대 : 박현우, 오장성) 언행불일치 (고려대 : 지원석, 박한맥)
장려상(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상) (상장, 장학금 팀당 20만원)	불이문 (고려대 : 이두리, 차순우) 알고리즘 (성균관대 : 강한용, 박세훈) 스마트비주얼 (명지대 : 정가람, 강한석) 띠 앓 (부경대 : 박준태, 박소연) 카카오 (연세대 : 김혜란, 심여진) 돌을새김 (한동대 : 전민규, 민은지) A.O.D (단국대 : 조윤진, 강민지) iPOD (단국대 : 김민정, 방송섭)
후원사특별상(한국대학신문사장, 대전광역시선관위원장) (상장, 상품)	신세계 (충남대 : 손진영, 김완중), 프로콘 (조선대 윤 결, 홍익대 하정혜)
스피커상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상장)	최종현 (명지대, 비주얼쇼크), 김주는 (고려대, 물방새날) 서준호 (연세대, Team OP), 이대근 (동아대, 꿈장이) 이지영 (이화여대, 젓가락), 김건휘 (국민대, C.B) 노필립 (한양대, 이지스), 김진기 (서울대, 스타카토)

9) TV 방송

대학생토론대회 최초로 토론대회의 TV방송을 기획하여 준결승과 결승전을 JTBC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방영되었는바, 대학생토론대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성룡 상임위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이호은 학회장, 방송인 유정아,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임운선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사회자로는 JTBC 송민규 아나운서가 진행하였다.

방송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방송사 관계자(PD,작가)와의 수시 협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지명한 심사위원 구성 등 치밀하게 대회를 준비하였고,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수준 높고 교육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10) 대회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대회 예고와 대회 결과 등 총 4회에 걸친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에서 기사화(총 61건 뉴스검색, 다음포털 기준)하였으며, 한국대학신문 신문광고 실시, 전국대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회 안내, 포스터·리플릿 배부 등 효과적으로 대회를 홍보하였다.

위와 같은 효과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학생토론대회의 권위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상이 향상되었으며, 민주시민 토론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었다.



[표 2-44] 제9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언론보도 현황

1차 (3.18)	보도자료	「선관위 창설 50주년 기념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 '국회의원 정수 축소, 후보자토론회에 양자토론제 도입'이라는 논제로 =
	기사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뉴스1, 특급뉴스, 대전시티저널, 충청투데이, 전라일보, 헤드라인제주, 신문고뉴스, 에코데일리, 경기인터넷뉴스, 경기방송, 한국대학신문 등 (총 38개 기사)
2차 (5. 9)	보도자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 미래지도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 마련 =
	기사	한국대학신문, 뉴시스, 충청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투데이 충청경제일보, 충청투데이 (총 8개 기사)
3차 (5.12)	보도자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학생 토론대회 성황리에 개최 = 준결승과 결승은 5월26일 TV로 방영 =
	기사	한국대학신문, 뉴시스, 어니스트뉴스, 충청투데이 (총 5개 기사)
4차 (5.20)	보도자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4세대 '경청' 팀 대상 수상 = 결승전은 5월 26일 TV로 방영 =
	기사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국대학신문, 뉴시스, 대학저널, 국제저널, 경남도민일보, 어니스트뉴스 (총 10개 기사)

2.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토론대회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토론대회의 효율적인 개최와 올바른 토론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13 고등학생토론대회'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원이 본선대회 심사위원 및 운영요원으로 참여하거나 참관하였으며,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대회 홍보와 언론사 취재를 지원하였다.

특히, 토론문화 발전에 기여한 교사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특별상을 시상하고, 대회 관리 우수 직원을 발굴하여 공로상을 포상하였으며, 위원장 격려금을 지급하고 시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문화상품권을 지원하였다.

[표 2-45] 2013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현황

구분	일자·장소	대회방식	토론논제	비고
대구	2013. 7. 25(목), 경북대	32개교 32개팀 조별 리그전 후 토너먼트방식	·명문대 진학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한다	3회
인천	2013. 7. 20(토), 경인교대	8개교 8개팀 조별 토론방식	·교육감직선제는 폐지하여야한다 ·국사과목은 수능 필수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현행 대통령임기제를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	3회
제주	2013. 7. 27(토),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16개교 29개팀 조별 리그전 후 토너먼트방식	·선거권자 연령을 만18세로 낮추어야한다	1회

1)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올해로 제3회 대회인 이번 대회는 작년보다 예선대회 기준으로 30여개팀이 늘어 대구시 소재 32개 고등학교 재학생 438개 팀 876명(매년 10%이상 참가자 증가추세)의 학생이 각 학교별 예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본선은 각 학교별 대표팀 32개팀 64명 전원이 지도교사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였고, 운영위원, 심사위원(교사·직원) 70여명, 행사진행요원 40명, 각 학교별 응원팀 등 총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참가한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대구시선관위주관 토론대회가 연속성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여러 분야별 경진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작년 교보문고의 협찬에 이어 금년도에는 대구지역의 대표적 금융기관인 대구은행에서 후원(300



제2회 대구고등학교생 토론대회

만원 및 시상 협조)하에 진행하여 위원회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쌓이는 노하우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등 직원들의 노력과 치밀한 계획 수립 및 각 참가자들에게 메일을 통한 사전 정

보 제공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 설명회 개최, 현장에서의 종합리허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준비와 작년도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 차원의 인문고 학생들의 디베이트 활성화 정책과 입상 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가점혜택이 주어지는 점과 지난 대회를 통해 이룬 우리위원회의 토론운영 신뢰성 등에 기인하여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적인 고등학생 토론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대구KBS, 대구MBC, TBC대구방송 등 지상파 방송사와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지역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후원명칭사용, 사전·사후 보도자료 제공, 특히 지역 유력신문사(매일신문, 영남일보) 부장급 기자를 결승전 심사위원으로 위촉·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선수로 참가한 학생뿐만 아니라 방청객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예선전부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결승전 이후에 경품 추첨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많은 방청객을 확보하고 참가한 학생들이 현장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배려하였다.



제2회 대구고등학교생 토론대회

[표 2-46]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수상자 현황

종 류	훈 격	수 상 자	비 고
대상(1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상	경북여고 박민경 배지영	
금상(1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상	송현여고 권소은 류승민	
은상(2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상	대구여고 이혜진 홍세미 덕원고 권예은 이유경	
동상(4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상	경원고 안현민 장민준 동문고 권효린 박노진 성광고 이태호 장재용 시지고 이효정 허수산	
특별상(2팀)	대구은행장상	대륜고 김상헌 안치영 정화여고 문지혁 우보인	
베스트 스피커상(1명)	대구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대륜고 안치영	
매너상(8명)	대구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대건고 신용준, 대구고 이규재 대구일과학고 배유로, 대륜고 김상헌 상원고 김은정, 상인고 하지연 정화여고 문지혁, 학남고 도희연	
지도교사상 (2명)	대구광역시교육감상	경북여고 전문정	대상팀 지도교사
		송현여고 김형민	금상팀 지도교사
공로상(1명)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상	대구시교육청 한준희	장학사

2) 인천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이번 제3회 토론대회는 대회규모, 참여 대상, 행사내용, 진행과정 등 모든 면에서 성대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며, OBS 등 언론이나 타지역 학생의 방청참여 등 대외 관심 또한 높아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 고등학생 토론대회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가. 심사과정

예선은 윤리교과협의회 소속 토론전문 교사와 위원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토론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하였고, 본선은 교수와 교사, 단체 임원 및 중앙토론위 토론팀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토론능력 뿐만 아니라 전달력과 태도, 팀워크 등도 검증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였다.

나. 홍보측면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포스터·리플릿·X배너 설치·배부, 관내 중·고등학교 방청학생 모집공고 등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비선거기간중에도 위원회가 민주시민정치교육 등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 토론진행사회자 역할확대

토론진행사회자의 역할이 크게 확대(기조연설·자유토론·맺음말 및 방청석 질문코너 진행 ⇒ 기존진행 + 논제소개, 참가팀 소개, 찬반팀 논거 요약후 발표)되었음에도 사전연습 및 철저한 시나리오 준비로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며 자긍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라. 시기 및 장소

선거가 없는 해로 학교 학사일정을 중심으로 행사일정을 기획(6월 중순 예선, 7월 중순 본선)할 수 있었기에 토론팀 접수나 방청학생 안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경인교대 대학시설이 아기자기하고 깔끔하며 잘 정리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행사 개최 장소로는 적절하였으나 대강당 에어컨 성능 등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다.



마. 참가자 및 방청학생 모집방법

3회째를 맞은 고등학생 토론대회는 작년의 56개팀보다 9개팀이 많은 65개팀이 참여하여 인천 지역에서 연례행사로 정착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 식전 및 식중 공연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협조로 소개받은 관현악 동아리가 식전에 공연하고 현란한 밸리댄스와 발랄한 방송댄스가 식중에 공연되어 딱딱할 수 있는 토론대회가 경쾌하고 흥미있게 진행되었다.

사. 예산과 행정측면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는 타 시도와 달리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열고 7백 명이 넘는 방청학생이 참여하며 서포터즈 학생들도 적극 활용하여 개최함으로써 일반수용비 및 특근매식비 예산이 부족하였는바 이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

규모있는 행사개최에도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서포터즈 참여를 확대하였고 휴일 차출된 직원에게는 월요일에 휴무토록 조치함으로써 업무추진과 직원복지가 상호 양립토록 하였다.

[표 2-47]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수상자 현황

훈 격	수 상 팀	수 상 자	수상자 기념 사진
대 상	위드리	가 정 고 송 만·신요셉	
금 상	코페르니쿠스	계산여고 박지수·이재은	
은 상	S-B	인천국제고 남장현·정진우	
동 상	호모루덴스	학 익 고 김민상·강석현	
장려상	청산유수	강화여고 이진경·김현진	
	네가터스	대 인 고 고주환·정진성	
	justice	인천외고 조수연·손정민	
	현 존	인천하늘고 이익준·이태현	
스피치상	위드리	가 정 고 송 민	
사회자상	-	인천외고 정 유 진	
	-	신 송 고 한 동 희	
지 도 교사상	위드리	가 정 고 장 도 영	
	코페르니쿠스	계산여고 전 영 록	

3)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생 토론대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처음으로 개최하는 토론대회임에도 심사위원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등으로 활기차고 원만하게 대회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언론보도를 통한 대외 홍보로 위원회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가. 참가자 신청

모든 고등학생 재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되, 참가팀을 학교별로 2팀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토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회 참여 학생 선발을 위한 교내 예선대회를 개최하는 등 토론문화 활성화 및 우수한 학생들이 대회에 참여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

타 기관·단체 토론대회 시 참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참가팀수를 2팀 이내로 결정한 것은 대회에 대한 관심도 및 대회운영 등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었다.

나. 토론 및 심사방법



예선전은 참가팀 수 감안 및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실력이 검증된 팀 선정이 용이하였다. ‘예선전 승리팀 결정방법’을 심사위원 경험이 없는 위원회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① 최다 승리팀, ② 승수가 같을 경우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 결정, ③ 위①·②의 방법으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 합의에 따라 승리팀 결정”으로 정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표 작성 등 승리팀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다. 심사 및 타이머 운용 내실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 주최로 처음 개최하는 토론대회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우리위원회 전임 직원(8명)들이 토론대회를 심사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대회심사시 심사표 작성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7.

24.(대회 3일전)에 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직원 심사위원들에 대하여 대회 진행방식 및 심사요령 등에 대하여 자세히 교육하는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9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준결승)’ 동영상 을 보면서 실제 심사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통하여 심사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다.



또한, 토론시간관리시스템(타이머) 운용 담당직원들도 타이머 운용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실제 대회시 타이머 운용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7. 26.(대회 전일)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원이 타이머 운용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는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9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준결승)’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 타이머 운용연습을 통하여 타이머 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원 2명이 대회 진행과 타이머 운용교육 등을 지원하여 도위원회 담당직원의 업무 부담감을 해소 하였다.

라. 대회장소 및 안내 표지

교통여건, 시설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통접근성이 용이하고 대회장 설비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선정하고 강의실 5개, 세미나실 1개, 대강당 1개 등을 무상 임차 사용하였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정류장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찾아와야 하는 관계로 도보 동선에 현수막 등(현수막 1개소, A-보드 5개소)을 곳곳에 설치하여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 예산운용

수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금액은 대회의 신뢰도와 품격 제고를 위해 가용 예

산 범위 내에서 타 대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행사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도 해당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행사의 격에 맞는 적절한 장소 선정이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행사진행도 외부용역 없이 위원회 직원을 활용하여 예산소요를 최소화하였다.

바. 개선사항

위원회 자체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토론논제를 정하고 학교별 예선부터 본선 대회까지 동일한 논제를 활용하여 교육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참여자인 고등학생 및 교사들에 대한 사전 논제 공모가 없어 관심도를 높이지 못하였다. 차후 대회 개최시 대회개최 기본계획 수립 후, 각급 학교 및 언론 등을 통하여 토론논제를 공모하여 관심도 및 홍보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언론사의 보도기사는 많았으나, 방송을 통한 보도를 위하여 향후 토론대회 개최시에는 지역 케이블TV나 지역민방등과 협조하여 토론대회 진행과정을 녹화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상장 수여를 8강 진출팀부터 수여하여 8강 진출 탈락팀인 경우에는 각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참가하였는데도 아무런 상장 수여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대회 개최시 참가상 등 상장 수여로 대회 참가에 대한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타 기관·단체 주최 토론대회가 같은 시기에 중복 개최되어 지도교사들로부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생과는 달리 토론지도교사의 지도를 통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 향후 대회 개최시 방학 기간보다는 학기 중에 개최하는 방



안 검토가 필요하며, 토론대회 개최계획을 최소 2개월 이상 전에 공고하여 토론논제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표 2-48]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생토론대회 수상자 현황

수상구분	학교명	학년	이름	성별	비고
대상 (장학금 100만원)	대기고	2-1	강현우	남	
		2-3	김종환	남	
금상 (장학금 50만원)	서귀포여자고	3-5	문영선	여	
		3-5	이은지	여	
은상 (장학금 30만원)	남주고	2-6	김태완	남	
		2-2	현상준	남	
은상 (장학금 30만원)	제주중앙여자고	1-1	김채림	여	
		1-3	강민희	여	
장려상 (문화상품권 5만원)	남주고	2-3	변민욱	남	
		1-2	현재곤	남	
"	제주제일고	2-4	김주상	남	
		2-9	조영철	남	
"	삼성여자고	1-1	김나연	여	
		1-1	김소희	여	
"	대기고	2-2	문혁준	남	
		2-10	양재혁	남	
지도교사상(대상)	대기고	교사	현준영		
" (금상)	서귀포여자고	교사	이지영		

3.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민주시민토론통화 저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시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오산시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 협약식은 이정희 위원장, 이성룡 상임위원, 박세각 사무국장 등

위원회 직원과 광상옥 오산시장, 오산시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등 오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10. 1.(화) 11:00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오산시와의 업무 협약 체결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업무 협약으로 위원회가 미래의 유권자인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들의 토론 활성화를 통하여 토론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협약 내용은 오산시의 특화된 토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토론문화 활성화 방안과 민주시민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오산시는 학교 토론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토론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토론연구모임을 대폭 지원함으로써 학교수업문화에 토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산학생토론동아리 활동을 통해 토론리그를 실시하여 토론캠프 및 오산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토론문화 활성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민주시민 토론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대학생토론대회와 시도별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주최·주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토론문화의 저변을 넓혀왔고, 이번 오산시와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그동안 쌓아온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4. 선거방송토론 바로보기 가이드 작성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비교·검증하고 올바른 선택 방법을 제시하여 정책선거 기반을 구축하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방송토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할 시청자 가이드를 보완하

여 「선거방송토론 바로보기 가이드」를 보완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선거방송토론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선거방송토론 개최 업무 흐름, 선거방송토론 바로보기 3대 요소, 선거방송토론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청하는 방법을 제시한 ‘선거방송토론 바로보기 가이드’, 후보자·정당간의 실질적인 비교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선거방송토론 평가표’이다.

이 가이드는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 탑재하였다.

선거방송 TV 토론 바로보기 평가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토론에 일하는 자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방송토론 바로보기 평가표를 제시하나,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이 반영되었습니다.

(해설기준 : 총점 100점, 각 항목별 10점)

비전과 정책 알아보기	후보자명	TV 토론자세 평가하기	후보자명
1. 지역 비전과 정책 방향설명을 제시하는가		1.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 비판적으로 상대에게 질문하는가 비판은 상대에게만 하는가	
2. 시장구분(중·대도시)으로서 역할과 지니심을 밝히는가		2. 토론규칙을 준수 하는가 비판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비시시한 발언을 하는가	
3. 정책의 내용이 실현가능가 부담이 얼마나 적은가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3. 진실성을 보여 주었는가 부담을 줄여줄 때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할 생각이 있는가	
4. 정책에 실현가능성이 부담이 적은 실현안을 제시 하는가 비소요한 비언어를 하는가		4. 언어사용이 적절했는가 비사용한 비언어 표현이 적절했는가	
5. 정책실현에 실패하면 있는가 비언어 사용에 근거하여 설명하는가		5.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했는가 비언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설명했는가	
합 계		합 계	

선거방송 TV 토론 바로보기 가이드

시장자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묻는지 어떤 후보자들이 그에부합하는지 등적 같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여 토론을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효과적인 **토론 시청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토론회를 보기 전에 꼭 숙지하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1.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후보자 TV토론이 끝나기 전부터 선거 전방송장을 미리확인, 토론에 따른 시간 조정을 위한 할수록 보는 재미가 느껴집니다.

2. 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 시청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가족·친구 등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세요. 생각 있는 토론교류의 장이 됩니다.

3.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성향을 내려놓습니다.

후보자로론가 후보자의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대치해 나올 수 있는 토론 기록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4.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춥니다.

후보자들이 발언에 대한 해를 발언을 제시할 때 주목하세요. 후보자들이 발언에 대해서 각각 어떤 해를 제안할 때를 듣고 있는지, 그 해를 가장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TV토론의 목적입니다.

5. 후보자들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 이념, 이념을 어떻게든 실현하는 동시에 상대 후보자들의 대안이나 제안을 무효화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각각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믿을만한 근거를 판단합니다.

6. 시청 후에도 후보자의 발언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토론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시청 이후 토론 후론 후보자들의 발언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하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토론에서 얻은 정보가 되는 것만은 물론입니다. 토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고 : 선거구(2012), 유권자 관심문제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개선방안과 유권자교육을 위한 DebateWatch 사례연구

제 3 장 부 록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및 대본 75

선거방송토론 관련법규 97

중앙토론위 주관 역대 토론회 개최 현황 120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횐행표

□ 일 시 : 2013. 6. 18(화) 10:00 ~ 12:00 (120분)

□ 장소 : KBS TS-4 스튜디오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	VCR	
2	오프닝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0:00	MC/ S/T	홍 기 섭 (KBS보도위원)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주제·진행방식 설명	30초	10:01:00		
4	사회자 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1 :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 방향]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안종범 → 김제남 → 이상규 → 홍종학 답변(각 1분)	5분30초 (4분30초)	10:01:30	MC/ S/T	A 새누리당 안종범 B 진보당 김제남 C 통합진보당 이상규 D 민주당 홍종학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2분30초 ▶ 안종범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11분 (10분)	10:07:00		
5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I	[주제2 : 갑을관계] ※ 사회자 Bridge ▶ 국민질문(30초) → 김제남 → 이상규 → 홍종학 → 안종범 답변(각 1분)	5분30초 (4분30초)	10:18:00	MC/ S/T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3분 ▶ 김제남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14분 (12분)	10:23:30		
6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II	[주제3 : 통상임금] ※ 사회자 Bridge ▶ 국민질문(30초) → 이상규 → 홍종학 → 안종범 → 김제남 답변(각 1분)	5분30초 (4분30초)	10:37:30	MC/ S/T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3분 ▶ 이상규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14분 (12분)	10:43:00		
7	사회자질문 후 자유토론 II	[주제4 : 경제활성화 해법]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홍종학 → 안종범 → 김제남 → 이상규 답변(각 1분)	5분30초 (4분30초)	10:57:00	MC/ S/T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2분30초 ▶ 홍종학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11분 (10분)	11:02:30		
8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III	[주제5 : 고용 및 근로환경 문제] ※ 사회자 Bridge ▶ 국민질문(30초) → 안종범 → 김제남 → 이상규 → 홍종학 답변(각 1분)	5분30초 (4분30초)	11:13:30	MC/ S/T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3분 ▶ 안종범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14분 (12분)	11:19:00		
9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IV	[주제6 : 지하경제 양성화] ※ 사회자 Bridge ▶ 국민질문(30초) → 김제남 → 이상규 → 홍종학 → 안종범 답변(각 1분)	5분30초 (4분30초)	11:33:00	MC/ S/T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3분 ▶ 김제남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14분 (12분)	11:38:30		
10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이상규 → 홍종학 → 안종범 → 김제남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11:52:30	MC/ S/T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7:3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8:30	VCR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대본

□ 일 시: 2013. 6. 18(화) 10:00~12:00 (120)분

□ 장소: KBS TS-4 스튜디오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1	타이틀	20초		CG	#정당정책토론회 주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오프닝	10:00:00 ~ 10:01:00 (1분)	○ 안녕하세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기섭입니다. ○ 오늘 토론회는 당면하고 있는 경제현안 가운데 특히 국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 각 당은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검증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 그럼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자	사회자 : 홍기섭 (KBS 보도위원) ○ 정당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정당의 정책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MBC·SBS가 동시 중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의장입니다.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진보정의당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입니다.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 위원장)
			○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입니다.	이상규	-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홍종학 국회의원입니다.	홍종학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각 정당의 당원들을 포함한 국민 사십여명이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객석	
3	주제 · 진행방식 · 설명	10:01:00 ~ 10:01:30 (30초)	○ 그리고 이 자리에는 對 국민 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 패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국민 패널께서는 토론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토론회는 2개의 사회자 질문과 4개의 국민 패널 질문으로 주제별 공통질문이 있고요, 이어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많은 주제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 사회자 질문·답변 후 자유토론(주제1,4) - 국민질문·답변 후 자유토론(주제2,3,5,6) - 맺음말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4	사회자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	10:01:30 ~ 10:18:00 (16분30초)	○ 오늘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주제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사회자	○ 주제1 :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 방향		
			○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한창 논의 중인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가 먼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 사회자 공통질문 :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 방향〉</u>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기업과 노동계 등 이해집단간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며 갈등양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한 각당의 입장과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안종범 정책위의장 답변(1분)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답변(1분)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이상규 정책위의장 답변(1분)	이상규	-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홍종학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홍종학 국회의원 답변(1분)	홍종학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1인 총 발언시간 2분30초		
			○ 지금부터는 토론자간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발언시간은 한 분당 총 2분30초씩이고요, 가급적 시간을 나눠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부터 시작합니다만, 이후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지요.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5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I	10:18:00 ~ 10:37:30 (19분30초)	☞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의장 발언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후 <자유토론>		
			- 1인당 총 2분30초 발언 -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언권을 신청한 토론자에게 발언 기회 부여 - 논의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되, 발언시간을 적게 쓴 토론자 수시 확인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 두 번째 토론주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을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공모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선정되신 국민패널계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김진구님!	사회자	○ 주제2 : 갑을관계
			○ (손 살짝들고) 네, 질문해 주시죠.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진구입니다. ‘갑을관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u><국민패널 공통질문 : 갑을관계></u>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직영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직영매장이 아닌데 인테리어비, 재료비,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무위험 차익을 상당부분 얻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갑을간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텐데요, 불평등한 갑을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 김진구 (회사원, 서울시 종로구) ○ 질문요지 : 불평등한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 질문내용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경우 : 국민질문내용의 밑줄부분을 재질문 ○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사회자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부터 답변해주시지요.		
			☞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답변(1분)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 이상규 정책위의장 답변(1분)	이상규	-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홍종학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홍종학 국회의원 답변(1분)	홍종학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새누리당 안중범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안중범 정책위부위원장 답변(1분)	안중범	- 안중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위원장)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바로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1인 총 발언시간 3분
			○ 이번에는 한 분당 총 3분의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순서에 의해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부터 발언해 주시지요.		
			☞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발언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이후 <자유토론>		
6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Ⅱ	10:37:30 ~ 10:57:00 (19분30초)	- 1인당 총 3분 발언 -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언권을 신청한 토론자에게 발언기회 부여 - 논의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되, 발언시간을 적게 쓴 토론자 수시 확인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 세 번째 토론주제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산정방식 등 그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 역시 국민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 주제3 : 통상임금
			○ 두 번째 질문자 최영란님! 네, 질문해 주시죠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최영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영란	- 최영란 (주부, 서울시 강서구)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국민패널 질문 :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어떻게 정할까 참 말들이 많은데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을 줄때에도 상여금을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의 문제에 대해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입장이 각각 다른데요. 각 당에서는 이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요지 :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
			○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 질문내용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경우 : 국민질문내용의 밑줄부분을 재질문 ○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사회자	
			○ 먼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이상규 정책위의장 답변(1분)	이상규	-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홍종학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홍종학 국회의원 답변(1분)	홍종학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안종범 정책위의장 답변(1분)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답변하시지요.		
			☞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답변(1분)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바로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토론자당 총 3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지고요,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먼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께서 발언 시작해주시지요.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1인 총 발언시간 3분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7	사회자 질문 후 자유토론 Ⅱ	10:57:00 ~ 11:13:30 (16분30초)	☞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 발언	이상규	-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이후 <자유토론>		
			- 1인당 총 3분 발언 -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언권을 신청한 토론자에게 발언기회 부여 - 논의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되, 발언시간을 적게 쓴 토론자 수시 확인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경제활성화 해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주제4 : 경제활성화 해법
			<u>< 사회자 공통질문 : 경제활성화 해법 ></u> 우리나라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1%대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고, OECD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금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2.6%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저성장 현상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초유의 상황인데요, 각 당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의 정책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사회자	
			○ 먼저, 민주당 홍종학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홍종학 국회의원 답변(1분)	홍종학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안종범 정책위부위원장 답변(1분)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위원장)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답변(1분)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이상규 정책위의장 답변(1분)	이상규	-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자유토론시간입니다.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 1인 총 발언시간 2분30초
			○ 이번에는 토론자 한 분당 총 2분30초의 발언시간이 주어집니다.		
			○ 그럼,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 민주당 홍종학 의원부터 발언 해주시지요.	홍종학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홍종학 국회의원 발언		
			이후 <자유토론>		
			- 1인당 총 2분30초 발언 -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언권을 신청한 토론자에게 발언기회 부여 - 논의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되, 발언시간을 적게 쓴 토론자 수시 확인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8	국민질문 후 자유토론 Ⅲ	11:13:30 ~ 11:33:00 (19분30초)	○ 다섯 번째 토론주제는 ‘고용 및 근로환경 문제’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국민패널께서 해주실 텐데요, 김석순님! 네,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주제5 : 고용 및 근로환경 문제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석순입니다.)	김석순	- 김석순 (주부, 서울시 관악구) ○ 질문요지 :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국민패널 질문 : 고용 및 근로환경 문제> 저는 청년층 자녀를 두 명 둔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 5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7.4%나 된다고 하네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출발을 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몇 년째 취업준비를 하고, 또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도 많은데요. 청년실업문제는 50대와 60대의 부모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인데, 각 당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 질문내용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경우 : 국민질문내용의 밑줄부분을 재질문 ○ 답변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사회자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안종범 정책위의장 답변(1분)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답변(1분)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이상규 정책위의장 답변(1분)	이상규	-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홍종학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홍종학 국회의원 답변(1분)	홍종학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바로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1인 총 발언시간 3분
			○ 이번에는 한 분당 총 3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지고 요,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지요.		
			☞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의장 발언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후 <자유토론>		
			- 1인당 총 2분30초 발언 -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언권을 신청한 토론자에게 발언 기회 부여 - 논의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되, 발언시간을 적게 쓴 토론자 수시 확인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9	국민질 문후 자유토 론Ⅳ	11:33:00 ~ 11:52:30 (19분30초)	○ 마지막 토론주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한 내 용인데요, 이번 주제 역시 국민패널 질문으로 시 작합니다. 마지막 질문자 정정환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주제6 : 지하경제 양성화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정정환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u>< 국민패널 질문 : 지하경제 양성화></u>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최근 국제적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세금을 탈루한 부유층, 권력층들이 사회적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간 의견이 같은지 다른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부유층의 재산은닉과 해외재산 도피를 근절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환	- 정 정 환 (언론기고인 경기도 의왕시) ○ 질문요지 : 페이퍼컴퍼니 등 부유층의 불법적인 재산은닉 등의 근절방안
			○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 질문내용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경우 : 국민질문내용의 밑줄부분을 재질문 ○ 답변시간 역시 1분입니다.	사회자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부터 답변해주시지요.		
			☞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답변(1분)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이상규 정책위의장 답변(1분)	이상규	-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홍종학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홍종학 국회의원 답변(1분)	홍종학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새누리당 안중범 의원 답변하시지요.	사회자	
			☞ 안중범 정책위부의장 답변(1분)	안중범	- 안중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바로 자유토론으로 이어가죠. ○ 이번 역시 토론자 한 분당 총 3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집니다. ○ 순서에 의해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지요.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 1인 자유토론시간 3분
			☞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발언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이후 <자유토론>		
			- 1인당 총 3분 발언 -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언권을 신청한 토론자에게 발언기회 부여 - 논의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되, 발언시간을 적게 쓴 토론자 수시 확인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10	맺음말	11:52:30 ~ 11:57:30 (5분)	○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면 맺음말 시간조정	사회자	○ 맺음말 : 1분
			○ 먼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말씀하시지요.	사회자	
			☞ 이상규 정책위의장 맺음말(1분)	이상규	-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홍종학 의원 말씀하시지요.	사회자	
			☞ 홍종학 국회의원 맺음말(1분)	홍종학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말씀하시지요.	사회자	
			☞ 안종범 정책위부위원장 맺음말(1분)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위원장)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말씀하시지요.		
			☞ 김제남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맺음말(1분)	김제남	- 김제남(진보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위원장)
			○ 맺음말,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11	클로징	11:57:30 ~ 11:58:30 (1분)	○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경제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사회자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잘 반영이 돼서 아무쪼록 국민들이 어깨를 쭉 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 긴 시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토론자, 그리고 국민패널 여러분 또, 귀한시간 내주신 방청 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 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간단히 목례후, 토론자들과 인사)		○ 스크롤 자막 - 위원장·상임위원 - 위원, 전문위원 - 사무국장, 팀장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 시 : 2013. 11. 25.(월) 10:00~12:00 (120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	VCR
2	오프닝	MC 오프닝 및 토론자·패널 소개	1분30초	10:00:00	MC/ S/T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주제·진행방식 설명	30초	10:01:30	
4	사회자 공통질문 후 답변	[대주제 :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안종범/박원석/김용익 /민병렬 답변(각 1분30초)]	8분 (6분30초)	10:02:00	MC/ S/T
5	토론자 자유토론 I	[소주제1 : 복지정책, 방향은?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6분 ▶ 박원석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27분 (24분)	10:10:00	MC/ S/T
5	전문가 패널 질문·답변 I	사회자 Bridge ▶ 패널1/2 개별질문과 김용익 토론자 답변(총 5분) : 김연명 → 김용익 / 한상완 → 김용익 (각 2분30초) ▶ 패널1/2 개별질문과 민병렬 토론자 답변(총 5분) : 김연명 → 민병렬 / 한상완 → 민병렬 (각 2분30초) ▶ 패널1/2 개별질문과 안종범 토론자 답변(총 5분) : 김연명 → 안종범 / 한상완 → 안종범 (각 2분30초) ▶ 패널1/2 개별질문과 박원석 토론자 답변(총 5분) : 김연명 → 박원석 / 한상완 → 박원석 (각 2분30초)	23분 (20분)	10:37:00	
6	토론자 자유토론 II	[소주제2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증세 필요한가?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6분 ▶ 민병렬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27분 (24분)	11:00:00	
7	전문가 패널 질문·답변 II	사회자 Bridge ▶ 패널2/1 개별질문과 안종범 토론자 답변(총 5분) : 한상완 → 안종범 / 김연명 → 안종범 (각 2분30초) ▶ 패널2/1 개별질문과 박원석 토론자 답변(총 5분) : 한상완 → 박원석 / 김연명 → 박원석 (각 2분30초) ▶ 패널2/1 개별질문과 김용익 토론자 답변(총 5분) : 한상완 → 김용익 / 김연명 → 김용익 (각 2분30초) ▶ 패널2/1 개별질문과 민병렬 토론자 답변(총 5분) : 한상완 → 민병렬 / 김연명 → 민병렬 (각 2분30초)	23분 (20분)	11:27:00	MC/ S/T
8	맺음말	사회자 Bridge ▶ 박원석/김용익/민병렬/안종범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5분 (4분)	11:50:00	MC/ S/T
9	클로징	사회자 클로징	1분	11:55:00	S/T F.S
10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00	VCR

김 상 철
(MBC논설위원)

<토론자>

A 새누리당
안 종 범B 정의당
박 원 석C 민주당
김 용 익D 통합
진보당

민 병 렬

<전문가패널>

1. 김 연 명
(중앙대)2. 한 상 완
(한대경제연구소)위원 등
소개
(자막)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대본

□ 일 시 : 2013. 11. 25.(월) 10:00~12:00 (120분)

□ 장소 : MBC D 스튜디오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1	타이틀	20초		CG	#정당정책토론회 주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오프닝	10:00:00 ~ 10:01:30 (1분30초)	○ 안녕하세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상철 입니다.	사회자	사회자 : 김상철 (MBC 논설위원)
			○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복지정책입니다. 복지의 확대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향과 수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당정책토론회 :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정당의 정책을 비교·평 가하기 위해,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 하고 KBS·MBC·SBS가 동시 중계하고 있습니 다.
			○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 2시간동안 각 당의 입장과 정책,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의장입니다.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입니다.	박원석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김용익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입니다.	김용익	- 김용익(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 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입니다.	민병렬	-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그리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전문가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자	
			○ 제 왼쪽에, 중앙대 김연명 교수입니다.	김연명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른쪽에는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본부장 자리 하셨습니다.	한상완	- 한상완(현대경제 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 토론자와 패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오늘 토론을 방청하기 위해 서른 분의 시민께서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객석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3	주제 · 진행방식 설명	10:01:30 ~ 10:02:00 (30초)	○ 오늘 토론회는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 각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요, ○ 이어서 소주제별로 토론자간 자유토론을 한 후 보충적으로 전문가 패널이 질문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토론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요, 토론주제 범위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 사회자 공통질문·답변 - 토론자 자유토론 - 전문가 패널 질문·답변 - 맺음말
4	사회자 공통질문 · 토론자 답변	10:02:00 ~ 10:10:00 (8분)	○ 오늘 토론회의 토론주제는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입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 사회자 공통질문 :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u> 우선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당장은 기초연금의 공약수정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정이 문제인데요. 세수부족을 이유로 복지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논쟁이 재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복지정책은 확대하면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지 각 당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시간은 1분30초입니다. ○ 먼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답변하시지요. ☞ 안종범 정책위의부장 답변(1분30초) ○ 정의당 박원석 의원 답변하시지요. ☞ 박원석 정책위의장 답변(1분30초) ○ 민주당 김용익 의원 답변하시지요. ☞ 김용익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답변(1분30초) ○ 통합진보당 민병렬 위원 답변하시지요. ☞ 민병렬 최고위원 답변(1분30초)	사회자 안종범 사회자 박원석 사회자 김용익 사회자 민병렬	○ 토론주제 : 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부장)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김용익(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5	토론자 자유토론 I	10:10:00 ~ 10:37:00 (27분)	○ 지금부터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자간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과 달리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주는 것으로 수정이 됐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백퍼센트 적용이라는 공약도 전액 국가 부담에서 일부 부담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 재정부담을 감소한 공약수정이라는 게 정부입장인 데요, 이런 정부의 복지공약 수정안에 대한 의견 등 각 당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 보겠습니다. ○ 발언시간은 한 분당 총 6분씩이고요, 가급적 시간을 여러번 나눠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발언은 순서에 의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부터 시작합니다만, 이후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정의당 박원석 의원부발언 시작해 주시지요.	사회자	○ 소주제1 : 복지정책, 방향은? ○ 토론 진행방식 -1인 총 발언시간 6분
			박원석 정책위의장 발언	박원석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후 <자유토론>		
			- 1인당 총 6분 발언 -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언권을 신청한 토론자에게 발언 기회 부여 - 논의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되, 발언시간을 적게 쓴 토론자 수시 확인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6	전문가 패널 질문 · 답변	10:37:00 ~ 11:00:00 (23분)	○ 지금부터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 내용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토론자에게 보충질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두 분 패널과 한 토론자간의 질문, 답변시간은 총 5분이 주어지는데요, 공정한 진행을 위해 패널 한 분당 2분30초 정도씩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먼저 김연명 교수가 질문하고, 이어서 한상완 본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패널(2명)과 토론자간 질문·답변(총 5분씩)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부장께서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패널(2명)과 토론자와의 질문답변은 총 5분씩이고, 패널 한 명당 2분30초로 총 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도록 함. – 첫 번째 패널의 질문답변이 2분30초를 넘을 경우 ▶ 패널이 질문하는 때에는 사회자가 발언을 제지하고, 토론자가 답변하는 중이라면 총 2분 45초를 넘어설 경우에 발언을 제지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첫 순서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입니다. ○ 먼저 김연명 교수님! 김용익 의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시죠.	사회자	
			☞ 김연명 교수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김연명/ 김용익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용익(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 다음 한상완 본부장님, 김용익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한상완 본부장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한상완/ 김용익	– 한상완(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 김용익(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 다음은 통합진보당 민병렬 위원입니다. ○ 먼저 김연명 교수께서 질문 시작해 주시죠.	사회자	
			☞ 김연명 교수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김연명/ 민병렬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다음 한상완 본부장님, 민병렬 위원에게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한상완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한상완/ 민병렬	– 한상완(현대경제연구원총괄연구본부장) –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다음은 안종범 의원입니다. ○ 먼저 김연명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김연명 교수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김연명/ 안종범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7	토론자 간 자유토 론Ⅱ	11:00:00 ~ 11:27:00 (27분)	○ 다음 한상완 본부장님, 안종범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한상완 본부장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한상완/ 안종범	- 한상완(현대경제 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마지막 순서는 박원석 의원입니다. ○ 먼저 김연명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김연명 교수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김연명/ 박원석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다음 한상완 본부장님, 박원석 의원에게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한상완 본부장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한상완/ 박원석	- 한상완(현대경제 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 바로 두 번째 자유토론으로 이어하겠습니다.		○ 소주제2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증세 필요 한가?
			○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복지에 필요한 재원 135조는 결국 별도의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축소 나 세입확충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 하지만 과연 증세없이, 정부가 공약하고 국민이 바 라는 수준의 복지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 의가 필요할 겁니다.		
			○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라 면 어떤 수준의 증세가 필요한지 복지재원을 어떻 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도 한 분당 총 6분씩 발언시간을 드립니다. 다. 시간을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토론 진행방식 -1인 총 발언시간 6분
			○ 순서에 의해 통합진보당 민병렬 위원부터 발언해 주시지요.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8	전문가 패널 질문· 답변	11:27:00 ~ 11:50:00 (23분)	☞ 민병렬 최고위원 발언	민병렬	-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이후 <자유토론>		
			- 1인당 총 6분 발언 -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언권을 신청한 토론자에게 발언기회 부여 - 논의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토론자를 지명하되, 발언시간을 적게 쓴 토론자 수시 확인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 지금부터는 전문가 패널이 각 토론자별로 보충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패널(2명)과 토론자간 질문·답변(총 5분씩)
			○ 앞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두 분 패널과 토론자에게 총 5분씩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패널 한 분당 2분30초 정도씩 시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이번에는 패널의 질문 순서를 바꿔서 한상완 본부장께서 질문하고, 이어서 김연명 교수가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패널(2명)과 토론자와의 질문·답변은 총 5분씩이고, 패널 한 명당 2분30초로 총 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도록 함. - 첫 번째 패널의 질문·답변이 2분30초를 넘을 경우 ▶ 패널이 질문하는 때에는 사회자가 발언을 제지하고, 토론자가 답변하는 중이라면 총 2분 45초를 넘어설 경우에 발언을 제지 ※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하여, 제시된 주제 범위내에서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첫 순서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입니다. ○ 먼저 한상완 본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한상완 본부장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한상완/ 안종범	- 한상완(현대경제 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 다음 김연명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김연명 교수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김연명/ 안종범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자학과 교수)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 다음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 먼저 한상완 본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한상완 본부장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한상완/ 박원석	- 한상완(현대경제 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다음 김연명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김연명 교수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김연명/ 박원석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이번에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입니다. ○ 먼저 한상완 본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한상완 본부장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한상완/ 김용익	- 한상완(현대경제 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 김용익(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 다음 김연명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김연명 교수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김연명/ 김용익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용익(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민병렬 위원입니다. ○ 먼저 한상완 본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사회자	
			☞ 한상완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한상완/ 민병렬	- 한상완(현대경제 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다음 김연명 교수께서 질문 시작해 주시죠.	사회자	
			☞ 김연명 교수 질문 시작~ 이후 자유롭게 질문-답변(2분30초)	김연명/ 민병렬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10	맺음말	11:50:00 ~ 11:55:00 (5분)	○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토론을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맺음말 : 1분
			○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 니다.		
			○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면 맺음말 시간조정		
			○ 먼저, 정의당 박원석 의원 말씀하시지요.	사회자	
			☞ 박원석 정책위의장 맺음말(1분)	박원석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김용익 의원 말씀하시지요.	사회자	
			☞ 김용익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맺음말(1분)	김용익	- 김용익(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 통합진보당 민병렬 위원 말씀하시지요.	사회자	
			☞ 민병렬 최고위원 맺음말(1분)	민병렬	-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말씀하시지요.	사회자	
11	클로징	11:55:00 ~ 11:56:00 (1분)	☞ 안종범 정책위부위원장 맺음말(1분)	안종범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위원장)
			○ 맺음말,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2시간동안 복지문제를 놓고 각 당의 토 론자들에게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 오늘 토론회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고 <u>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워 보입니</u> <u>다.</u> (상황에 맞게...) 하지만 적어도 가능한 한 복 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다르지 않았 습니다. ○ 오늘 토론회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계기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토론을 마칠 까 합니다.	사회자	

번호	항 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 두 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토론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자리를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패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간단히 목례후, 토론자들과 인사)		○ 스크롤 자막 - 위원장·상임위원 - 위원, 전문위원 - 사무국장, 팀장

선거방송토론 관련법규

1. 공직선거법

[(타)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49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정 2010.1.25>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

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별표 3] (규칙 제143조제2항 관련) <개정 2010.1.25>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3. 정 당 한 사 유 없 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 지 아 니 한 행 위	○법 제261조제2항·법 제 8 2 조 의 2 제 4 항	400	가. 매회마다 : 400

2. 정당법

[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50호]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1.11.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개정 2005.8.4>)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 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4>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 3 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 1.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 4 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

에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로 한다.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
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
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
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
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
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
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
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
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
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
·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

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주장과 반론을 위한 시간은 토론자 간에 균현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 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

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 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 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321호, 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정 2013.11.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의 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후보자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를 지정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7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② 토론회장의 구조는 어느 쪽에서 토론자를 카메라로 비추어도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제9조(토론자의 지참물 등)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다.

②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제12조(재방송)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토론회의 재방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전원이 재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토론위 주관 역대 토론회 개최현황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연도	차수	개최일시	장 소	토 론 자	토론 분야
2005	1차	12. 3(수) 10:00 ~ 12:00	국회의원 회 관	원내수석 부 대 표	정치, 민생
2006	1차	7. 19(수) 10:00 ~ 12:00	KBS	정책위의장	경제, 교육
	2차	11. 24(금) 23:40 ~ 01:40	MBC	당대표	국정현안
2007	1차	5. 30(수) 10:00 ~ 12:00	KBS	원내대표	국정현안
	2차	8. 3(금) 23:40 ~ 01:40	MBC	당대표	정치, 외교, 안보
2008	1차	6. 27(금) 10:00 ~ 12:00	KBS	정책위의장	경제
	2차	11. 28(금) 10:00 ~ 12:00	KBS	대표자가 지 정	경제
2009	1차	4. 15(수) 10:00 ~ 12:00	MBC	대표자가 지 정	경제
	2차	11. 13(금) 23:00 ~ 01:00	KBS	당대표	정치
2010	1차	7. 16(수) 10:00 ~ 12:00	KBS	정책위의장 등	경제, 사회
	2차	11. 16(화) 23:20 ~ 01:20	MBC	정책위의장 등	경제
2011	1차	3. 28(월) 10:00 ~ 12:00	KBS	정책위의장 등	국정현안
	2차	11. 15(화) 10:00 ~ 12:00	MBC	정책위의장 등	국정현안
2012	1차	6. 26(화) 10:00 ~ 12:00	KBS	정책위의장 등	정치, 사회
	2차	7. 18(수) 10:00 ~ 12:00	MBC	정책위수석 부의장 등	경제, 노동, 복지
2013	1차	6. 18(화) 10:00 ~ 12:00	KBS	정책위의장 등	경제
	2차	11. 25(월) 10:00 ~ 12:00	MBC	정책위의장 등	경제, 복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분	차수	개최일시	장소	토 론 자	토론 분야
‘06 지선	1차	3. 25(토) 10:00~12:00	MBC	정책위의장	경제, 노동, 과학
	2차	4. 15(토) 10:00~12:00	KBS	원내대표	정치, 행정, 외교, 안보
	3차	5. 12(금) 22:00~24:00	MBC	당대표	국정현안
‘07 대선	1차	9. 21(금) 10:00~12:00	KBS	정책위의장	경제, 노동, 선거
	2차	10. 25(목) 10:00~12:00	MBC	원내대표	교육, 복지, 선거
	3차	11. 2(금) 23:40~01:40	KBS	선대위원장	정치, 외교, 선거
‘08 국선	1차	1. 31(목) 10:00~12:00	MBC	원내대표	정치
	2차	2. 29(금) 10:00~12:00	KBS	정책위의장	경제
	3차	3. 13(목) 23:20~01:20	MBC	당대표	선거
‘10 지선	1차	3. 23(화) 10:00~12:00	MBC	원내대표	교육, 행정
	2차	4. 23(금) 10:00~12:00	KBS	정책위의장	경제
	3차	5. 6(목) 23:20~01:20	MBC	당대표	정치, 선거
‘12 국선	1차	1. 30(월) 10:00~12:00	KBS	대표권한대행 등	교육, 행정
	2차	2. 24(금) 10:00~12:00	MBC	대표권한대행 등	경제
	3차	3. 5(월) 10:00~12:00	KBS	대표 등	정치, 선거
‘12 대선	1차	9. 24(월) 10:00~12:00	KBS	원내대표 등	교육, 행정
	2차	10. 31(수) 10:00~12:00	MBC	정책위의장 등	경제
	3차	11. 16(금) 10:00~12:00	KBS	선대위 대변인 등	정치, 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현황

구분	차수	개 최 일 시	장 소	토론 분야
‘04 비례 국선	1차	4. 8(목) 22:00~24:00	프레스 센터	만생분야
	2차	4. 13(화) 23:10~01:10		정치분야
‘07 대선	1차	12. 6(목) 20:00~22:00	KBS	정치, 외교, 통일, 안보
	2차	12.11(화) 20:00~22:00	MBC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비초청	12.13(목) 23:00~01:00	KBS	국정현안
	3차	12.16(일) 20:00~22:00	MBC	경제, 노동, 복지, 과학
‘08 비례 국선	1차	3. 31(월) 10:00~12:00	MBC	정치, 교육 등
	비초청	4. 1(화) 14:00~16:00	MBC	주요 국정현안
	2차	4. 4(금) 10:00~12:00	KBS	경제, 복지 등
‘12 비례 국선	1차	4. 3(화) 10:00~12:00	MBC	정치, 사회
	비초청	4. 4(수) 14:00~16:00	MBC	경제, 복지
	2차	4. 9(월) 10:00~12:00	KBS	정치, 사회, 경제, 복지
‘12 대선	1차	12. 4(월) 20:00~22:00	MBC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비초청	12. 5(수) 23:00~01:00	MBC	경제, 노동, 복지, 환경
	2차	12. 10(월) 20:00~22:00	KBS	초청대상토론의 전분야
	3차	12. 16(일) 20:00~22:00	KBS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

201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 보고서

2014년 1월 일 인쇄

2014년 1월 일 발행

발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쇄 : 일 지 사
